

변경 대비표

1. 대상 펀드 :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
2. 변경 대상 :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3. 변경 사유 :

| 구분 | 주요 변경 사항 |
|--------|--|
| 집합투자규약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일괄신고서 |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4. 효력 발생(예정)일 : 2023년 6월 20일

5. 세부 변경 사항 :

◆ 집합투자규약

| 항목 | 정정사유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서 전반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
|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 | |
|------------------|--|---|
| | <p>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1월1일 이후).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 <p>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4. <좌동></p> <p>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1월1일 이후).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신설></p> | <p>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p>1. ~ 2. <좌동></p> <p>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p> |
|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3. ~ 5. <생략></p> | <p>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1. <좌동></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p> <p>3. ~ 5. <좌동></p> |
| 부칙 | <신설>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3년 06월 20일부터 시행, 적용한다. |

◆ 일괄신고서

| 항목 | 정정사유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서 전반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삭제>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

| | | | |
|--|-----------------------------------|---|---|
|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
| 간이투자설명서-[요약 정보]-투자비용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총 보수·비용 및 동종유형 총보수 <생략> | 총 보수·비용 및 동종유형 총보수 <u>업데이트</u> |
| 간이투자설명서-[요약 정보]-투자실적추이/운용전문인력 | | <생략> | <u>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u> |
|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 <u>업데이트</u> | <u>운용역 관련 정보 업데이트('23년 5월 31일 기준)</u> |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신설> |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증권대차 거래의 목적 기재 |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 | <신설> | <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증권대차 거래의 위험 기재 |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연환산 표준편차 : <u>19.97%</u>) <후략> |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연환산 표준편차 : <u>16.78%</u>) <후략> |
|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업데이트> |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생략> (주1) ~ (주4) <생략> (주5) ~ (주7) <신설> | ·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 동종유형 총보수 업데이트 (주1) ~ (주4) <좌동> (주5)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포함) 인 경우 <u>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u> (주6)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p>· <신설></p> | <p>(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p>· 펀드 총보수를 제외한 기타 발생 가능한 비용의 하위 구성 내역 업데이트</p> |
| <p>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나. 과세</p> <p>(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 | <p>① 세액공제(2014.1.1.부터)</p> <p>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저축과 합산한 저축불입액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② <생략></p> <p>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p> <p>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p>① 세액공제(2023.1.1.부터)</p> <p>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 5백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② <좌동></p> <p>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p> <p>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 | | |
|--|----------------------------|--|---|
| <p>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p> | | <p><생략> <신설></p> | <p><업데이트> [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을</p> |
| <p>제3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 | <p><생략></p> | <p><업데이트></p> |
|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p> | | <p><생략></p> | <p><업데이트></p> |
| <p>제4부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p> |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 <p><생략>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 <p><현행과 같음> ⑨ <u>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⑩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
| <p>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p> | | <p>-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 <p>-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u>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p> |
| <p>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p> | |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